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청및면·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청 및 면·동사무소의 소재지(위치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소재지) 계룡시청의 소재지는 계룡시 금암동 10번지에 두고, 면·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

면·동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재지(위치)	비 고
두마면사무소	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76-6	
남선면사무소	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957-8	
금암동사무소	계룡시 금암동 10	